

한국콘텐츠진흥원 -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해외진출 공동협력 업무 협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이하 “협회”)는 다음과 같이 한국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진흥원과 협회가 한국콘텐츠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양 당사자가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1. 신한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해외진출 공동 네트워크 구축 (Welcon 공동활용, 신한류 빅데이터 구축, 해외 쇼케이스 공동 개최 등)
2. 콘진원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한 협회 회원사 상설전시관 구축, 법률/회계 자문, 현지 통역, 스마트센터 지원
3. 해외 시장 진출 시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공동조사 및 공동 워크숍 개최

제3조(협약의 이행) 양 기관은 제2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
2. 본 협약에 따른 업무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의 실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정보의 제공)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관련 당사자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비밀유지) 본 협약의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제반 거래정보와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협약 이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협약서의 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의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에 따른다.

제7조(협약의 변경 및 중단) 양 기관은 상호 합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8조(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진흥원과 협회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본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2월 1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김영준

김영준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회장 송병준



한국콘텐츠진흥원 - (사)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해외진출 공동협력 업무 협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사)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연합”)은 다음과 같이 한국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진흥원과 연합이 한국콘텐츠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양 당사자가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1. 신한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해외진출 공동 네트워크 구축 (Welcon 공동활용, 신한류 빅데이터 구축, 해외 쇼케이스 공동 개최 등)
2. 콘진원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한 연합 회원사 상설전시관 구축, 법률/회계 자문, 현지 통역, 스마트센터 지원
3. 해외 시장 진출 시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공동조사 및 공동 워크숍 개최

제3조(협약의 이행) 양 기관은 제2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
2. 본 협약에 따른 업무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의 실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정보의 제공)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관련 당사자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비밀유지) 본 협약의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제반 거래정보와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협약 이

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협약서의 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협약의 해석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의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에 따른다.

제7조(협약의 변경 및 중단) 양 기관은 상호 합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
거나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8조(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진흥원과 연합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여, 별도
의 합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본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2월 1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김영준

김영준

(사)한국매니지먼트연합
회장 신주학

신주학

한국콘텐츠진흥원 - (사)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해외진출 공동협력 업무 협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사)한국모바일게임협회”(이하 “협회”)는 다음과 같이 한국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진흥원과 협회가 한국콘텐츠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양 당사자가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1. 신한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해외진출 공동 네트워크 구축 (Welcon 공동활용, 신한류 빅데이터 구축, 해외 쇼케이스 공동 개최 등)
2. 콘진원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한 협회 회원사 상설전시관 구축, 법률/회계 자문, 현지 통역, 스마트센터 지원
3. 해외 시장 진출 시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공동조사 및 공동 워크숍 개최

제3조(협약의 이행) 양 기관은 제2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
2. 본 협약에 따른 업무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의 실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정보의 제공)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관련 당사자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비밀유지) 본 협약의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제반 거래정보와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협약 이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협약서의 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의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에 따른다.

제7조(협약의 변경 및 중단) 양 기관은 상호 합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8조(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진흥원과 협회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본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2월 1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김영준

김영준 

(사)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황성익



한국콘텐츠진흥원 -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해외진출 공동협력 업무 협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이하 “진흥원”) 과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이하 “협회”) 는 다음과 같이 한국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이하 “협약”) 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진흥원과 협회가 한국콘텐츠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양 당사자가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1. 신한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해외진출 공동 네트워크 구축 (Welcon 공동활용, 신한류 빅데이터 구축, 해외 쇼케이스 공동 개최 등)
2. 콘진원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한 협회 회원사 상설전시관 구축, 법률/회계 자문, 현지 통역, 스마트센터 지원
3. 해외 시장 진출 시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공동조사 및 공동 워크숍 개최

제3조(협약의 이행) 양 기관은 제2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
2. 본 협약에 따른 업무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의 실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정보의 제공)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관련 당사자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비밀유지) 본 협약의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제반 거래정보와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협약 이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협약서의 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의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에 따른다.


제7조(협약의 변경 및 중단) 양 기관은 상호 합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8조(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진흥원과 협회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본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2월 1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김영준

김영준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회장 남진규



한국콘텐츠진흥원 - (사)한국웹툰산업협회

해외진출 공동협력 업무 협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사)한국웹툰산업협회”(이하 “협회”)는 다음과 같이 한국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진흥원과 협회가 한국콘텐츠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양 당사자가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1. 신한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해외진출 공동 네트워크 구축 (Welcon 공동활용, 신한류 빅데이터 구축, 해외 쇼케이스 공동 개최 등)
2. 콘진원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한 협회 회원사 상설전시관 구축, 법률/회계 자문, 현지 통역, 스마트센터 지원
3. 해외 시장 진출 시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공동조사 및 공동 워크숍 개최

제3조(협약의 이행) 양 기관은 제2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
2. 본 협약에 따른 업무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의 실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정보의 제공)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관련 당사자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비밀유지) 본 협약의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제반 거래정보와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협약 이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협약서의 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의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에 따른다.

제7조(협약의 변경 및 중단) 양 기관은 상호 합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8조(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진흥원과 협회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본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2월 1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김영준

김영준

(사)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김유창

김유창

한국콘텐츠진흥원 -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해외진출 공동협력 업무 협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협회”)는 다음과 같이 한국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진흥원과 협회가 한국콘텐츠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양 당사자가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1. 신한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해외진출 공동 네트워크 구축 (Welcon 공동활용, 신한류 빅데이터 구축, 해외 쇼케이스 공동 개최 등)
2. 콘진원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한 협회 회원사 상설전시관 구축, 법률/회계 자문, 현지 통역, 스마트센터 지원
3. 해외 시장 진출 시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공동조사 및 공동 워크숍 개최

제3조(협약의 이행) 양 기관은 제2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
2. 본 협약에 따른 업무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의 실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정보의 제공)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관련 당사자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비밀유지) 본 협약의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제반 거래정보와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협약 이

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협약서의 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의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에 따른다.

제7조(협약의 변경 및 중단) 양 기관은 상호 합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8조(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진흥원과 협회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본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2월 1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김영준

김영준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 이규영

